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15. . .	
연월일	(제 회)	
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출자	국무위원 000 (0000장관)
제출연월일	2015. . .

1. 의결주문
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 등 실용신안등록취소사유를 특허심판원에 제공하면 심판관이 해당 실용신안등록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 도입(안 제3장의 2 신설)

- 1)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으로 출원공개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중이 심사에 참여하여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음.
- 2) 공중이 참여하여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 등 실용신안등록취소사유를 특허심판원에 제공하면 심판관이 해당 실용신안등록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

제도를 도입함

나. 심사관의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(안 제14조의2 신설)

- 1) 심사관이 실용신안등록결정의 등본을 발송하더라도 실용신안권자가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등록료를 내야만 실용신안권이 발생함. 한편, 심사관이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이후부터 실용신안권이 발생하기 전까지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더라도 다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
- 2)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관의 실용신안등록결정 후에도 실용신안권이 발생하기 전까지 명백한 거절이유를 새롭게 발견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를 다시 재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권 재심사제도를 도입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- 4)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특허법」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한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.

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라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실용신안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에 대해서도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고,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실용신안등록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) ①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결정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새롭게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결정을 취소하고,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(이하 이 조에서 “직권 재심사”라 한다)를 다시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

니하다.

1. 새롭게 발견한 거절이유가 제8조제3항제2호, 같은 조 제8항 및 제9조에 따른 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

2.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

3.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실용신안등록결정 취소이유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.

제15조 중 “제58조의2”를 “제58조의2, 제59조의2”로 한다.

제3장의2(제15조의2 및 제15조의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장의2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

제15조의2(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) ① 누구든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.

1.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

2. 제4조제2항(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을 위반한 경우

3.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경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공보에 게재된 제21조제3항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실용신안등록취소 신청을 할 수 없다.

제15조의3(「특허법」의 준용)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심리·결정에 관하여는 「특허법」 제78조의4부터 제78조의16까지를 준용한다.

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0조 중 “제81조의3, 제83조 및 제84조”를 “제81조의3 및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”로 한다.

제21조제3항 중 “실용신안권자의 성명·주소 및 실용신안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실용신안공보”를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등록공보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)
2.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
3.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
4.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
5.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
6. 등록공고연월일
7.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그 통지서에 적은

선행기술에 관한 정보(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)

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21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제26조를 삭제한다.

제28조 중 “제99조부터 제103조까지”를 “제99조, 제99조의2,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, 제103조의2, 제104조”로 한다.

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이해관계인”을 “이해관계인(제2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수 있다. 다만,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(제5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”를 “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특허법」 제99조의2제1항의 청구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제33조 중 “제166조까지”를 “제161조까지, 제161조의2, 제162조부터 제166조까지, 제166조의2, 제166조의3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47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한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

한 모든 정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.

제40조제6항 중 “제7항까지”를 “제8항까지”로 한다.

제47조제2항 중 “심결”을 “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”로 한다.

제49조 중 “실용신안등록”을 “실용신안등록,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,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국어번역문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3제7항 및 제3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용신안등록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3장의2, 제47조제2항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실용신안권의 등록공고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용신안등록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것부

터 적용한다.

제6조(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이 법 시행 전에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7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의3(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) ① ~ ⑥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8조의3(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특허법」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한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.</p>
<p>제14조(거절이유통지) ①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4조(거절이유통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라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실용신안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에 대해서도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고,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
<p>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제14조의2(실용신안등록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) ①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결정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</p>

이유를 새롭게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결정을 취소하고,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(이하 이 조에서 “직권 재심사”라 한다)를 다시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새롭게 발견한 거절이유가 제8조제3항제2호, 같은 조 제8항 및 제9조에 따른 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

2.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설정 등록된 경우

3.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실용신안등록 결정 취소이유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

제15조(「특허법」의 준용) 실용
신안등록출원의 심사·결정에
관하여는 「특허법」 제57조,
제58조, 제58조의2, 제60조, 제6
1조, 제63조의2, 제64조부터 제6
6조까지, 제66조의2, 제67조, 제
67조의2, 제67조의3, 제68조 및
제78조를 준용한다.

<신 설>

본다.

제15조(「특허법」의 준용) -----

----- 제58조의2, 제59조의2 -----

제3장의2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
제15조의2(실용신안등록취소신
청) ① 누구든지 실용신안권의
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
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
그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
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.
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
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
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
있다.
1.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
경우

2. 제4조제2항(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을 위반한 경우

3.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경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공보에 게재된 제21조제3항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.

제15조의3(「특허법」의 준용)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심리·결정에 관하여는 「특허법」 제78조의4부터 제78조의16까지를 준용한다.

<삭 제>

제18조(실용신안등록원부) ①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.

1. 실용신안권의 설정·이전·소멸·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
2.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·보존·이전·변경·

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

3. 실용신안권·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·이전·변경·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

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 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및 도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.

제19조(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)

<삭 제>

①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권자에게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

따라 또는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특허청장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특허법」 제136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제20조(「특허법」의 준용)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「특허법」 제80조, 제81조, 제81조의2, 제81조의3,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.

제21조(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) ①·② (생략)

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성명·주소 및 실용신안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.

제20조(「특허법」의 준용) -----

----- 제81조의3 및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--.

제21조(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등록공보-----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④ (생 략)

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동안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

1.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)

2.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

3.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

4.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

5.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

6. 등록공고연월일

7.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그 통지서에 적은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(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)

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④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6조(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

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용신안등록 또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고안 또는 발명의 실시 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고안 또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가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.

1. 동일한 고안에 대한 둘 이상의 실용신안등록 중 그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등록의 원(原)실용신안권자

<삭 제>

2. 등록실용신안과 특허발명이 동일하여 그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(原)특허권자
3.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등록의 원실용신안권자
4. 특허를 무효로 하고 그 발명과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. 다만,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특허법」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28조(「특허법」의 준용)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「특허법」 제97조, 제99조부터 제103조까지, 제106조, 제106조의2,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, 제111조의2,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, 제118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제125조의2를 준용한다.

제31조(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)
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(제5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28조(「특허법」의 준용) -----

----- 제99조, 제99조의2,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, 제103조의2, 제104조 -----

-----.

제31조(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)
① 이해관계인(제2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) -

----- 수

조부터 제188조까지, 제188조의 2,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.

제35조(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) ① ~ ⑥ (생략)

<신설>

⑦ (생략)

제40조(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) ① ~ ⑤ (생략)

⑥ 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, 제34조의2, 제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, 제38조,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특허법」 제200조, 제202조제1항·제2항 및 제208조를 준용

----- 제161조까지, 제161조의2, 제162조부터 제166조까지, 제166조의2, 제166조의3-----

제35조(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47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한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.

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
제40조(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제8항까지-----

한다.

⑦ (생 략)

제47조(위증죄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제49조(거짓행위의 죄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제47조(위증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-----
-----.

제49조(거짓행위의 죄) -----

----- 실용신안등록,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,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	
연 락 처	(042) 481 - 5736